

제 호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	
허가받은 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허 가 사 항	③기 간		. . . ~ . . .		④방법 및 도구		
	⑤지 역						
	⑥종 류						
	⑦수 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준수사항>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유해야생 동물 확인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 내역

(뒤 쪽)

[illegible]